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05
----------	-------

발의연월일 : 2025. 11. 24.

발 의 자 : 문정복 · 민형배 · 문금주
김영배 · 김종민 · 민병덕
윤준병 · 진선미 · 정을호
이원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자동차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시행과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통학로와 학교 주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차량 유입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제33호 신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9호부터 제32호”를 “제29호부터 제3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이미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3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u>제29호부터 제32호</u> 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 ----- ----- ----- ----- ----- ----- ----- <u>제29호부터 제33호</u> ----- ----- ----- ----- ----- ----- ----- ----- ----- -----.
1. ~ 32. (생략) <u><신설></u>	1. ~ 32. (현행과 같음) 33.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